

#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1278
----------	------

발의년월일 : 2004. 9. 15.  
발 의 자 : 이창수 의원 외 10인

## 1. 제안이유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사업의 수립·시행·평가 단계등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여 시정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안제7조제1항)
- 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안제7조제1항)
- 다. 시에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록 전체, 회의자료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함(안제6조)
- 라.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안제9조)

## 3. 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

##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의 추진은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시와 시민이 협동하여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시민참여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시와 시민이 각자가 해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 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 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민주시민으로서 자기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록 전체, 회의 자료 등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시민참여)** ①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개최는 정례화 한다.

**제8조(예산편성의 시민참여)** ①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②시민의 예산편성 참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예산참여 시민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예산위원회 위원은 지역성, 전문성, 직능성을 감안한 6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둔다.

④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한다.

**제9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시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후 즉시 시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후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278
----------	------

제안년월일 : 2004. 12. .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장

## 1. 수 정 이 유

-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위원의 활동범위, 위원구성, 운영방법등을 정하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
- 조례안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함.

## 2. 주 요 골 자

-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주민참여기본조례안”으로 수정함.
- 시장이 시민참여를 위해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을 삭제함(안제4조제2항)
- 안산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정함(안제8조제3항)

- 위원회의 위원수를 “60인”에서 “80인”으로 수정하고, 위원선정 기준을 정함(안제8조제4항)
- 시정정책 토론 청구는 선거권있는 200명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자가 청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1개월 이내에 토론에 응하여야하며, 토론결과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토록 함(안제9조)

#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을 “안산시주민참여기본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중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한다)”을 “안산시 주민(이하 “주민”이라한다)”으로, “시민”을 “주민”으로, “시와 시민이”를 “주민과 시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시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제1호 중 “시민참여”를 “주민참여”로, “시민”을 “주민”으로, “시와 시민이”를 “주민과 시가”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시와 시민이 각자가 해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를 “주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4조내지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공개)** ①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위원회의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 ①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②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제8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①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②주민의 예산편성 참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활동할 수 있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예산공청회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8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3. 기타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⑤ 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참석 수당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 및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200명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 한다.

**제10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한 후 결과 및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u>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u>	<u>안산시주민참여기본조례안</u>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안산시민</u>(이하 “<u>시민</u>”이라 한다)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u>안산시</u>(이하 “<u>시</u>”라 한다)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u>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2조(기본이념)</b> ① <u>시민참여의 추진은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시와 시민이 협동하여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u></p> <p>② <u>시민참여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u></p> <p><b>제3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시민참여</u>”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u>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u></li> <li>“<u>협동</u>”이란 <u>시와 시민이 각자가 해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u></li> </ol>	<p><b>제1조(목적)</b> ..... <u>안산시 주민</u>(이하 “<u>주민</u>”이라 한다)..... ..... ..... <u>주민과 시민</u> ..... .....</p> <p><b>제2조(기본이념)</b> ① <u>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시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u></p> <p>② <u>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u></p> <p><b>제3조(정의)</b> ..... ..... 1. “<u>주민참여</u>”..... ..... <u>주민</u> ..... ..... <u>주민과 시가</u> ..... ..... 2. ..... <u>주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u> .....</p>

원 안	수 정 안
<p><b>제4조(시장의 책무)</b> ① 시장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 행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b>제4조(시장의 책무)</b> ① 시장은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5조(시민의 책무)</b> 시민은 민주시민으로서 자기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p>	<p><b>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b> 주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p>
<p><b>제6조(회의공개의 원칙)</b>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록 전체, 회의 자료 등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p>	<p><b>제6조(위원회의 공개)</b>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위원회의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p>
<p><b>제7조(위원회에의 시민참여)</b>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시장이 임명한다.</p> <p>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개최는 정례화 한다.</p>	<p><b>제7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b>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p>

원 안	수 정 안
<p><b>제8조(예산편성의 시민참여) ①</b> <u>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u></p> <p><b>②</b> <u>시민의 예산편성 참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b>③</b> <u>예산위원회 위원은 지역성, 전문성, 직능성을 감안한 6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둔다.</u></p> <p><b>④</b> <u>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u></p>	<p><b>제8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①</b> <u>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u></p> <p><b>②</b> <u>주민의 예산편성 참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예산참여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b>③</b> <u>위원회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활동할 수 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b> <u>예산편성에 관한 사항</u></li> <li><b>2.</b> <u>예산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u></li> <li><b>3.</b> <u>예산공청회에 관한 사항</u></li> </ul> <p><b>④</b>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8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b> <u>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u></li> <li><b>2.</b> <u>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자</u></li> <li><b>3.</b> <u>기타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u></li> </ul> <p><b>⑤</b> <u>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b>⑥</b> <u>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b>⑦</b> <u>위원회 참석 수당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u></p>

원 안	수 정 안
<p><b>제9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b>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시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p>	<p><b>제9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b>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 및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200명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p> <p>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 한다.</p>
<p><b>제10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b>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조사후 즉시 시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후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p>	<p><b>제10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b>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조사한 후 결과 및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p>
<b>제11조(시행규칙) (생략)</b>	<b>제11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b>